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Contents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8
기부식품등 제공	8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8
양곡할인	8
공공산림가꾸기	8
산림서비스도우미	9
영양플러스	9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저축계좌)	9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10
장애인연금	1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0
차상위 자활근로	10
청소년 특별지원	11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1
취업성공패키지	11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12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12
학교우유급식	12
전기요금 할인	12
도시가스 요금 경감	12
열요금 감면	13
미소금융	1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3
풍수해보험 사업	13
농업인안전보험	14
어업인안전보험	14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1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14

2. 의료 지원	15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15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1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6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6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1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16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7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17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18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18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
장애인 의료비 지원	19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9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9
3. 주거 지원	2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0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20
4. 교육 지원	21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21
국가장학금(1 유형)	21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21
대학생 근로장학금	2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2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22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22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22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23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3
파란사다리	23

5. 돌봄 지원 24

가사간병 방문 지원	24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24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4
발달재활 서비스	25
언어발달 지원	25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2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5
장애인 활동지원	2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6
지역아동센터 지원	26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26
초등돌봄교실	26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26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26
가족역량강화지원	27
아이돌봄 지원	27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27
가사도우미 지원	27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28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28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28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28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28
통합문화이용권	28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9
스포츠강좌 이용권	29



별도의 수급자격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30
긴급복지	30
기초연금	30
근로장려세제(EITC)	30
자녀장려세제(CTC)	31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31
새희망홀씨	31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3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2
새일여성인턴	32
햇살론	32
햇살론17	3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32
2. 의료 지원	33
국가암검진	33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33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해소	33
치매 검진 지원	3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3

3. 주거 지원	34
국민임대주택 공급	34
기존주택 전세임대·용자	34
다가구 매입임대 출·용자(기존주택 매입임대)	3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용자	34
영구임대 주택공급	34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35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35
4. 돌봄 지원	3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35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기부식품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등을 제공 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 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 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양곡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 할인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공공산림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참여제한 : 최대3년간 2년이상 참여자,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2인 이상 가구는 6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8,720원 ~ 7만 6,72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약 10개월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산림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산림서비스 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취업취약계층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취약계층의 선발 우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임금지원 - 주40시간 근무, 10개월 단기 고용, 월170만원 가량 임금 지급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산림청
영양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청년저축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 월 2~4만원 장애아동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월 7~20만원 - 경증장애인 월 2~10만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p>진단서 발급비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p> <p>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p>	<p>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p> <p>검사비 -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p>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장애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0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최대 38만원 지급(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38만원 지급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	---	--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p>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p> <p>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보건 복지부
----------------------------	---	---	--	--------

차상위 자활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35만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	--	---	--------------------------	--------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청소년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포함) -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등), 건강(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 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 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문화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p>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p> <p>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p> <p>(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p>	여성가족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의료비·생활지원비·교육 훈련비 등 지원 	<p>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p>	보건복지부
----------------------------------	---	--	---------------------------------	-------

취업성공 패키지	<p>패키지 I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 계층*</p> <p>*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p> <p>패키지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18~34세) : 소득무관 - 중·장년(35~69) : 중위소득 100% 이하 	<p>패키지 I</p> <p>1 단계 • 3주~1개월 • 참여수당 : 최대 25만원</p> <p>2 단계 • 최장 8개월 • 훈련비 최대 5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0~20%)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 (6개월)</p> <p>3 단계 • 최장 3개월 •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 50만원, 최대 3개월</p>	<p>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또는 참가신청서를 우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 제출</p> <p>* 각 지자체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연계 될 수 있도록 안내 필요</p>	고용노동부
		<p>패키지 II</p> <p>1 단계 • 1주~1개월 • 참여수당 : 최대 20만원</p> <p>2 단계 • 최장 8개월 • 훈련비 최대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5~50%)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 (6개월)</p> <p>3 단계 • 최장 3개월</p>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경우 더 큰 요금감면 제도가 있으니 신청시 창구에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S 교육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BS 데이터 안심음션(KT, LGU+), EBS 데이터팩(S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 고객센터 (☎ 114 또는 앱, 웹)를 통해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교우유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및 기타(단,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 기관이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신청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
전기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cyber.kepco.co.kr)통해 신청 * 한전고객센터 (☎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요금 경감 (※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 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열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p>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 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p> <p>*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p>	산업통상자원부
미소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2인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p>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재단·지역법인</p>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 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연체 31~89일)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연체 90일 이상) 이자전액 감면, 원금감면(최대70%), 원금분할상환(최장10년) 	<p>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p>	금융위원회
풍수해보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대상물(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소유 및 임차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지원율*을 일반가입자 대비 상향지원 * 일반가입자 50%이내, 차상위계층 59%이내, 기초생활수급자 67%이내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p>지자체 및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p>	행정안전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농업인 안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87세의 농업인 - 일반농가 - 영세농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어업인 안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영세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어업인은 50%) 	지역 수협 회원 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해양수산부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제한 완화 (고졸이하→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 단,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여부 확인 신청'에서 접수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 중 겸직허가 	복무기관에 겸직허가신청서 및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	병무청



2. 의료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연령 무관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배아 7회(기존대상 회당 110만원, 확대대상 회당 90만원) - 동결배아 5회(기존대상 회당 50만원, 확대대상 회당 40만원) - 인공수정 5회(기존대상 회당 30만원, 확대대상 회당 20만원) * 다만, 비용 집행 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집행 유지(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10% 감인) ** 비급여 중 지원항목 : 배아동결비용,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사전신청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검진 만60세 이상 모든 노인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제외)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등 지원 제외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만 3세 미만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보청기 지원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희귀질환 등 환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의료비 지원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보건복지부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가정(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안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안경비 지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청(사전)	보건복지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11~18세 여성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전자바우처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여성가족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70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650개소)하되, 사회 소외계층 100개소 이상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 (300명) 	<p>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지자체 →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p>	환경부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9세~18세 청소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3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 5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p>학교에서 이용 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p> <p>* 청소년전화 (☎ 1388)</p>	여성 가족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공단·국가암검진(1차 검진)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연 최대 220만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 복지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장애인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외래진료시 일부지원 2,3차 외래진료시 전액 지원 입원 시 의료(요양) 급여비용 지원 (단,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p>건강보험공단</p> <p>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 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제공</p> <p>의료기관</p> <p>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p>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병비(97개 질환), 특수 식이구입비(28개 질환) 지원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자 : 최대 20만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등급(1~5등급,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자감경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국가보훈처



3. 주거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 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토교통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중 LP가스를 호스*로 사용하는 가구 *압력조정기 후단부터 중간밸브 전단까지 호스로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지자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가구 등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공지원(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및 물품지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냉방용품 등)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기관,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으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4. 교육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소속 학교에서 대상 학생 발굴 추천 등	교육부
국가장학금 (1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연간 최대 520만원 (기초·차상위)부터 최소 67.5만원 (학자금 지원 8구간)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 단, 미혼에 한함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지원 * 단,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3구간은 연간 520만원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의 경우 11,150원 지원범위 학기당 450시간/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교육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가정의 중2~고3 학년 학생 ※ 당연 지원 대상은 아니며 선발될 경우 지원 ※ (SOS장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지속 지원 * 장학금 매월 25~45만원 지원 ※ (SOS장학)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한시 지원하며, 장학금만 지원 	<p>소속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p> <p>* 한국장학재단 (☎ 1599-2000)</p>	교육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학생(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p>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 (고2·고3) 50명 대상/ 학업 장려비 지원</p> <p>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p>	<p>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p> <p>* 한국장학재단 (☎ 1599-2290)</p>	교육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상환학자금(’09년 2학기 이후) 대출 대학 졸업생 및 기타사유* *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본인·부모의 중증질병, 고용·산업 위기지역 실직자 본인 및 자녀, 대학생 창업자, 본인이 차상위계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졸업 후 상환취약 계층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p>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p> <p>* 한국장학재단 (☎ 1599-2000)</p>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교육청별, 지원항목별로 다르나 통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등),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인터넷 통신비 등) 	<p>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포)을 통해 신청</p>	교육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자 중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지원 	<p>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p> <p>* 한국장학재단 (☎ 1599-2000)</p>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신청 불가 (중복수혜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인원 8,000명 내외,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p>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신청</p> <p>※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p> <p>*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p>	교육부
파란사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p>연수 내용 언어 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 국가별 4~5주 간 해외 연수 →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p> <p>지원 내용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500만원 내외</p> <p>* 파견 국가 별 물가수준 고려 차등지원</p>	<p>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20년 20개교)에 신청</p> <p>* 권역별 주관대학 선정 현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p>	교육부



5. 돌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가사간병 방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 생활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 생활 지원) 및 연계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등)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방과후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39,000원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0만원 지원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교육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발달장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제공(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p>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p> <p>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에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p>	<p>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p> <p>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p>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품목 무료교부(지원기준액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휠체어용 보행기, 피더시트 등 23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6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3품목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 급여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p>* 차상위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 정액(20천원),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면제)</p>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의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 자(장애인·노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서비스비용의 70~90% 국비지원, 10~30% 본인부담) 	<p>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p>	<p>보건 복지부</p>
지역아동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 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p>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신청</p>	<p>보건 복지부</p>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주기적 면담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 학습, 사회정서, 심리행동, 보호, 부모교육, 부모지원 서비스 등 제공 	<p>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p>	<p>보건 복지부</p>
초등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p>학교별 돌봄교실 신청</p>	<p>교육부</p>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점검이가 재가서비스 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활동 및 식사 수발·체위변경 등 활동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말벗 등 지원 	<p>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p>	<p>국가 보훈처</p>
취약농가 인력 지원 (행복나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및 읍면 소재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1만 2,000원,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p>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p>	<p>농림 축산 식품부</p>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가족역량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 사례관리 및 상담, 자녀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 사고·재난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 대상 긴급 위기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여성 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취업한 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돌봄(연 720시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60~200시간) 만 2세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여성 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 (초4~중3)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보충학습 지원, 급식, 상담, 캠프 등 	초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및 유선신청 중등 방문 및 유선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www.gov.kr)에서 신청 **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www.youth.go.kr/yaca)	여성 가족부
가사도우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가구 중 임신부·출산3개월 이내·중위소득50%이하 • 어촌지역 거주자 중 만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이하·다문화조손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2시간 이상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등 가사 서비스 제공, 다문화 및 65세이상 가구의 말벗 활동 또는 각종 복지 서비스 설명·안내 	지역 수협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해양수산부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가구 (농어촌 지역의 만65세 이상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신청자가 '디지털 방송 시청지원센터' (124 콜센터)로 전화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 순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 배정인원 10% 범위 내 경제적 약자 우선순위 배정 * 지정업체에서 인원 배정 신청 (매년 6월) → 병무청에서 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지정업체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편입 신청	병무청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 지원(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신청 (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번)	법무부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평일 10시~17시 전국 65개 배치 기관(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으로 전화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법무부
통합문화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2014.12.31.이전 출생자 (2020년 기준, 6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9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홈페이지 (tv.kcmf.or.kr)를 통해 신청 * 상담전화 (☎ 1688-4596)	방송통신위원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 (1인당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우편신청	산림청
스포츠강좌 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시·군·구 주민센터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포털 사이트(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298~9)	문화체육관광부



별도의 수급자격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긴급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중한질병 등)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3,562천원), 재산기준(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p>【 4인가족 월간 종류별 지원액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 123만 ■ 주거(대도시) : 64.3만 ■ 복지시설 : 145만 ■ 의료 : 300만(1회) <p>* 가구원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 상이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p>	관할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자 또는 129보건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요청 또는 신고	보건 복지부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2020년 선정 기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148만원 ▶ 부부가구 236.8만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최대 단독가구 25.5만원, 부부2인 가구 40.8만원 지급 (소득하위 40% 이하인 경우 단독가구 30만원, 부부2인 가구 48만원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보건 복지부
근로장려세제 (EI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구성별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으로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 구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 최대 150만원 홀벌이 최대 260만원 맞벌이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 	정기신청 (5.1.~5.31.), 기한후 신청 (6.1.~11.30.) 기간에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ARS(1544-9944),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자녀장려세제 (C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12.31.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연간 총소득기준 4,0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정기신청 (5.1.~5.31.), 기한후 신청기간 (6.1.~11.30.)에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ARS, (1544-9944),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 공고	국토 교통부
새희망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 자금 등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전국 15개 은행에 신청	금융 위원회
여성가장 창업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기준중위소득의 60%) 여성 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10천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연2%, 최대 지원기간 6년(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전국 16개 지회로 문의 (신청 서류는 우편 제출)	중소 벤처 기업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만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임금 지원 - 주30시간 근무, 월 125만원 가량 임금 지급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행정 안전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아동양육비(월35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 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online, bokjiro.go.kr)을 통해 신청	여성 가족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월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자녀, 월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online, bokjiro.go.kr)을 통해 신청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인턴 연계시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등) 여성 우선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장려금 60만원 지급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거주지 또는 인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1544-1199) *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	여성가족부
햇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햇살론 : 1천5백만원 사업자 햇살론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서민금융회사(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에 신청	금융위원회
햇살론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 17.9%, 한도 700만원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분 - 부득이하게 추가한도가 필요한 분(최대 1,400만원 한도) 	전국 14개 은행 지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및 5개 은행 모바일 앱(신한, 우리, 전북, 농협, 광주)	금융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 어선 및 어선원 - 어선원 10톤미만/30톤미만/50톤미만/100톤미만 - 어선 10톤미만/20톤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원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 톤수별 차등 지원) - (어선원) 10톤 미만 70% / 30톤 미만 60% / 50톤 미만 30% / 100톤 미만 20% - (어선) 10톤 미만 70% / 20톤 미만 60% 	관할 수협 또는 조합으로 문의	해양수산부

2. 의료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가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부담분 10%(90% 공단 부담) 지원 	<p>각 연도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선정 및 안내</p>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40% 또는 60% 감경(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p>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선정되어 별도 신청없음.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신청</p>	보건복지부
치매 검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감별검사 : 만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p>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p>	보건복지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로 진단 받아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p>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p>	보건복지부



3. 주거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민임대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18년도 기준 3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해당주택 분양 시 공급기준에 맞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산기준 충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사업시행자(나·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군구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다가구 매입임대 출·용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산기준 충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군구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버팀목 전세자 금대출 차상위 계층 저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본 금리 대비 1%p 금리 우대 * 금리는 보증금 및 소득 구간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방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영구임대 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사업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군구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서민의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위해 5년, 10년 분납임대 및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 주택을 공급 	입주대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으로 신청	국토교통부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이하의 실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 286천원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4. 돌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구입비용 지원 - 일반대상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접수기간 중 관할 시·군·구 접수처 또는 인터넷 (www.at4u.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상담전화 (☎ 1588-26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발 행 인 보건복지부
발 행 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발 간 일 2020년 10월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디 자 인 디자인세륜
제 작 서울 02) 2273-5167
세종 044) 863-5167-8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